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구급차 운전자 안전교육 및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등 관리·감독 강화 〉

■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275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구급차 운전자 안전교육 및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등 관리·감독 강화	3

I. 개요

1.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27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한지아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6. 16.
-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급차 운전자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일반 차량의 운전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안전수칙 준수 의무가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설 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사고는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로 위 일반 시민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피해를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설 구급차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구급차 운용자가 구급차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음주운전·무면허운전·약물운전 등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구급차 운전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구급차 운용자에게 명확히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5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구급차 운전자 안전교육 및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등 관리 ·감독 강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구급차 운용자가 구급차 운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운전경력증명서를 받아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구급차 운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5·제55조제3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4조의5(구급차 운용자의 관리·감독 의무) ① 구급차의 운용자는 구급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운전면허 유효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급차의 운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 의무 이행을 위하여 구급차의 운전자에게 해당 업체에서의 근무기간에 한하여 「도로교통법」 제137조에 따라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현행	개정안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①·② (생략)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 등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	<u>위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증명 서류(이하 “운전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운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③ 구급차의 운용자는 운전경력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운전면허가 유효하지 아니하거나 구급차 운행 중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교통법규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운전자의 구급차 운행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의 기준·방법, 제2항에 따른 증명 요청의 요건·주기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현행	개정안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설></u> 5. · 6. (생략) ④ · ⑤ (생략)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4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u>구 급차 운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u> 6. · 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사설구급차 위탁 운용 의료기관 257개소 가운데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기관은 80개소 (31.1%)에 불과하며¹⁾,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례²⁾ 등도 발생하고 있어, 구급차 운전자의 관리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임.

□ 개정안에 따르면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³⁾의 사항인 무면허·음주운전,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를 위반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또한,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137조⁴⁾에 따라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증명 서류(이하 “운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운전경력증명서 확인 결과 운전면허가 유효하지 않거나 구

1) 한지아 의원실, “사설구급차 안전관리법 대표발의”, 2026.6.17. <<https://blog.naver.com/zeeahan635/224318709603>>

2) 연합뉴스, “응급 아난테 과속 질주...10대 숨지게 한 사설 구급차 기사 영장”, 2026.5.12.
<<https://www.yna.co.kr/view/AKR202605121258000062>>

3)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4) 「도로교통법」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① 경찰청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는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④·⑤ (생략)

급차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또는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운전자의 구급차 운행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정안은 이와 같이 구급차 운용자에게 구급차 운전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구급차 운전자의 윤리의식 및 안전수칙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응급환자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법안 심사에 있어 다음 사항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우선, 구급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제나목5)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여, 구급차 운전자는 동법 제73조제4항6)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자동차 교통안

5)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나. 구급차

6)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④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2. (생략)

②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교통안전교육: 최초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이 경우 직전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다만,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3시간 이상,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한다.

1. 긴급자동차와 관련된 도로교통법령

2. 긴급자동차의 주요 특성

3. 긴급자동차 교통사고의 주요 사례

4. 교통사고 예방 및 방어운전

5.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마음가짐

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교육”)을 받고 있음.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의 주요 내용은 긴급자동차와 관련된 도로교통법령, 긴급자동차의 주요 특성, 긴급자동차 교통사고의 주요 사례, 교통사고 예방 및 방어운전,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마음가짐 등임.

이와 같이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구급차 운전자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 교육과 개정안에 따른 안전교육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개정안에 따른 구급차 운전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 조치 또는 적용례를 두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 시행 당시의 기존 구급차 운전자가 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 시행 이후 구급차 운전에 종사하게 되는 자와 같이 특정 시점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법 제2조제6호⁷⁾에 따라 “구급차등(구급차(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도 응급환자의 이송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구급차 외의 이송수단에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정안의 “구급차”에 대한 사항을 “구급차등”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 다음으로, 개정안 제44조의5제2항은 구급차 운용자가 구급차 운전자에게 운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운전경력증명서 확인 결과 문제가 확인될 경우 구급차 운용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영업허가 취소·업무정지 등의 제재의 대상이 되므로, 이와 같은 부담으로 인하여 구급차 운용자가 운전경력증명서의 제출 요청을 회피할 가능성도 존재함.

이를 감안할 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구급차 운용자의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요청을 재량으로 할지 의무로 규정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구급차 운전자의 안전수칙 준수 필요성에 공감하나, 다음과 같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른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는 구급차 운용자가 확인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 전 구급차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은 추가될 필요
- 개정안에 따른 관리·감독의 기준 및 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현장의 운영 실태 및 정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

- 구급차 운용자에는 응급환자이송업체 외에도 국가·지자체,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등이 포함되므로 “해당 업체”를 “해당 구급차 운용기관”으로 문구 수정 필요(안 제44조의5제2항)

□ (소방청)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119구급차 등 구급차 운전자는 이미 「도로교통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긴급자동차 교통안전운전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므로, 동 교육 이수 시에는 개정안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둘 필요

문 의 처
02)6788-5509